

2024년 3차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을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추천 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
- ☐ (지원내용) 벤처나라 등록을 위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추천
 - 추천받은 기업은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 추천대상
 - 서울소재 기업 중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 상표부착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기업
- (추천 제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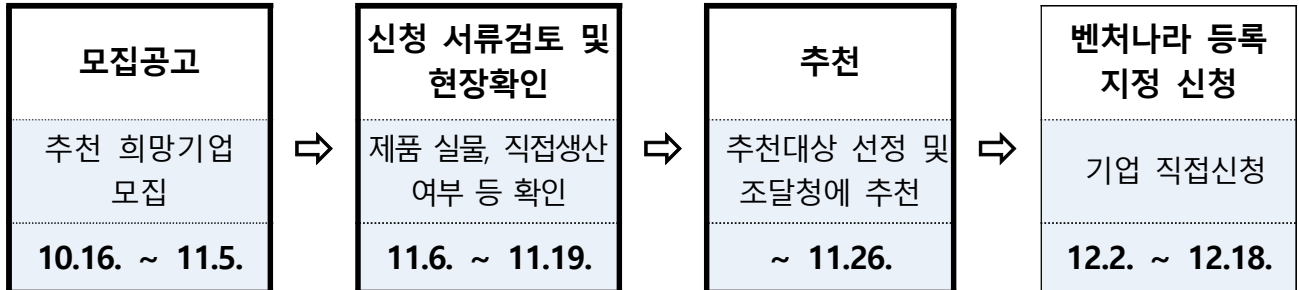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참고] 2024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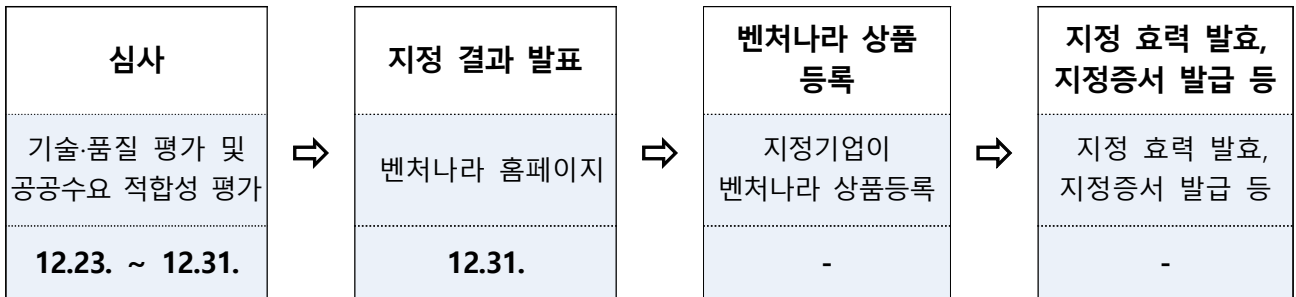
- ①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 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 신청 가능**
- ②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
- ③ 창업기업확인서 첨부 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 ④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2. 추천절차 및 신청방법

□ 추천절차



□ 조달청 지정절차



※ 지정 결과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조달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24.10.16(수) ~ 11.5(화)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yjinkim1@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문 의 처) 02-2110-6364

※ 추천 관련 문의만 해당되며, 벤처나라 제도 관련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
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506, 7193, 6259)

3. 신청서류

구분	서 류 명	비고
1	○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서식1)	필수
2	○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서식2)	필수
3	○ 상품설명서(서식3)	필수
4	○ 사업자등록증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필수
5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 필수
	○ 창업기업 확인서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6	○ 직접생산, OEM 생산여부 확인 증빙자료 * (예시)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OEM 계약서 등	필수
7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서식4)	필수
8	○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9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있는 경우 제출
10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서식5)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6)	필수

※ 제출 서류는 추천신청 접수 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

※ 평가 면제 대상자격은 6쪽 [참고] 확인

※ 국민안전 관련 물자(14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관련 서식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의 벤처나라 상품 등록 서식을 수정 인용함

4.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이점

-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 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는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하며,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5. 유의사항

- ☐ 확인서, 인증서 등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이 조달청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결과 발표일('24.12.31) 이전에 만료 예정인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및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벤처나라 지정 신청이 가능함
- ☐ 기관추천 가점은 '24년 12월 심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추천기업은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12.2~12.18)에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제8조)

1. 성능인증(EPC)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제품
4. 신기술(NET)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품질인증제품
7. 삭제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기술평가 면제대상**(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제9조)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 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품질평가 면제대상**(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제10조)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제품
7.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